

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요양급여기준 개정

치협에서는 보사부로부터 의료보험 진료수가기준 및 요양급여기준이 보사부 고시 제86-35호 및 36호(86. 7. 14)로 개정, 고시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전문 수록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보건사회부 고시 제86-35호

진료수가기준 개정

의료보험법(법률 제3768호, 1984. 12. 31)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진료수가기준(보건사회부 고시 제86-27호, 1986. 5. 2)중 진료수가산정방법을 다음과같이 개정 고시한다.

진료수가기준

진료수가 산정방법중 제 1 항을 다음과같이 개정한다.

1. 요양취급기관이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(이하 “보험급여”라 한다)를 함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“별표1 진료수가기준액표”와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등재되지 아니한 국산완제 의약품에 대하여는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등재된 의약품과 그 제조원 및 성분이 동일한 것일지라도 그 규격 및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진료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.

1986. 7. 14.

보건사회부장관

부 칙

이 고시는 1986. 8. 1. 부터 시행한다.

보건사회부 고시 제86-36호

요양급여기준 개정

의료보험법(법률 제3768호, 1984. 12. 31) 제29조 제3항 및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(보건사회부 고시 제84-47호, 1984. 6. 30)중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.

요양급여기준

- “IV.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와 심사”중 “1. 진료비용의 청구 및 지불”의 가. 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- 요양취급기관의 의료보험진료비는 진료수가기준, “별표1 진료수가기준액표” 및 “별표2. 약가기준액표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등재되지 아니한 국산완제 의약품에 대하여는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등재된 의약품과 그 제조원 및 성분이 동일한 것일지라도 그 규격 및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진료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.

1986. 7. 14.

보건사회부장관

부 칙

이 고시는 1986. 8. 1. 부터 시행한다.

진료수가 기준 개정 (신구 대비표)

시행일 : 86. 8. 1일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1. 진료수가산정방법중 1항 요양취급기관이 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(이하 “보험급여”라 한다)를 함에 소요된 진료비용의 산정은 “별표1 진료수가 기준액표”와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의한다.</p>	<p>1. 진료비용은 “별표1 진료수가 기준액표”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등재되지 아니한 국산완제의약품에 대하여는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등재된 의약품과 그 제조원 및 성분이 동일한 것일지라도 그 규격 및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진료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.</p>	<p>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된 의약품과 그 제조원 및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일지라도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은 진료비로 청구하는 것을 금지.</p>

요양급여 기준 개정 (신구 대비표)

시행일 : 86. 8. 1일

현행	개정	개정사유
<p>IV.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와 심사 1. 진료비용의 청구 및 지불 가. 요양취급기관에서 진료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는 진료수가 기준 “별표1 진료수가 기준액표” 및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근거하여야 한다.</p>	<p>IV. 보험급여에 소요된 비용의 청구와 심사 1. 진료비용의 청구 및 지불 가. 요양취급기관의 의료보험진료비는 진료수가 기준, “별표1 진료수가 기준액표” 및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등재되지 아니한 국산완제의약품에 대하여는 “별표2 약가기준액표”에 등재된 의약품과 그 제조원 및 성분이 동일한 것일지라도 그 규격 및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는 이를 진료수가로 청구할 수 없다.</p>	<p>보험약가기준액표에 등재된 의약품과 그 제조원 및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일지라도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은 진료비로 청구하는 것을 금지.</p>